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(9판) 안내

1. 관련
   가.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(8판)(산재예방지원과-530, '22.3.10)
   나.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6판) 개정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14996, '22.4.25)

2.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, 종전 「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8판)을 개정한 9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9판)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본부 각 과, 지방관서(산재예방지도과), 고객상담센터, 산업안전보건공단

주무관	김영인	공업사무관	원치욱	산재예방지원과장	전결 2022.5.4. 금정수
협조자					

시행 산재예방지원과-1024 (2022. 5. 4.) 접수 산재예방지도과-4833 (2022. 5. 6.)

우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4층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925 팩스번호 044-862-8074 / swiizl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